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31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 박지혜 • 민병덕 • 김문수

김성환 • 이소영 • 김승원

전진숙・임미애・김 윤

강준현 · 서영교 · 오세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성·우영되고 있음.

특히, 기후 문제는 환경·산업·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 ·운영할 필요가 있으나, 짧은 활동 기간, 법률안 심사 권한의 미비 등 그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.

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 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·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 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46조의4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6조의4(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)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.
 -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 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
 - 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
 - 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 건의 심사
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제81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본다.
 -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
- 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-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⑧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지46조의4(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)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둔다.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」및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의 심사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에 대한에비심사3. 그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주요 안건의 심사	현 행	개 정 안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하는 경우에는 기후위기대응특		제46조의4(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 회) 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 회를 둔다. 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탄소 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 련된 법률안의 심사 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 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(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다) 및 결산 에 대한 예비심사 3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 련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주요 안건의 심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

- <u>의2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</u> <u>본다.</u>
- ③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 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 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.
- ④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하며, 보임되거나 개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- 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 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 서 선거한다.
- 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

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 다.

8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